# 「환경 및 조경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04. 3. 1. 제정 판 (시행 2004. 3. 1.) → 2006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06. 3. 1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64/compare?from=153&to=154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7:24:45 · 밑줄은 바뀐 부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1조(목적)**<br>본 대학의 환경과 조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 및 조경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| **제1조(목적)**<br>본 대학의 환경과 조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 및 조경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|
| **제2조(구성)**<br>1. 위원회는 사무처장, 기획실장, 재무실장, 관리과장, 교수 중 3인으로 구성한다.<br>2. 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, 관리과장이 서리를 맡는다. | **제2조(구성)**<br>①위원회는 사무처장, 기획조정실장, 재무실장, 관리과장(팀장), 교수 중 3인으로 구성한다.<br>②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, 관리과장(팀장)이 서기를 맡는다. |
| **제5조(회의)**<br>1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br>2.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.<br>3.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. | **제5조(회의)**<br>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br>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.<br>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 |

## 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**「환경 및 조경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제1조 중 "중요한 사항"을 "중요사항"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사무처장, 기획조정실장, 재무실장, 관리과장(팀장), 교수 중 3인으로 구성한다.
②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, 관리과장(팀장)이 서기를 맡는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.
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